

□ 2016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개정사항	시행	내용
법의 명칭 변경	'16.1.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주·종업원 정기 교육 전환	'16.1.21	영업 시작전 소방안전교육 1회 실시 →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국민연금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 해당 영업장 종사하는 종업원 소방교육종류(신규교육, 수시교육) → 소방교육종류(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처벌 강화	'16.1.21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 200만원 →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일괄적용(1차) → 과태료 부과 차등적용(1차, 2차, 3차)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시행	'16.1.25	소방시설 지진등에 의한 보호기준 없음 → 지진등에 의한 소방시설 보호기준 마련(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하면 강력 처벌	'16.1.25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근거 마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근거 마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 처벌기준 대폭 강화	'16.1.21	감리결과 거짓 제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조감리원 도입	'16.1.21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상주감리대상에 1명 이상의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
소방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 폐지	'16.1.21	소방시설공사금액의 3/100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은행 등에 예치 → 규정삭제(사인간 합의에 의한 서면계약서로 규정)
탱크로리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화	'15.12.	정보제공 효과의 불충분 → 정확한 정보제공 효과(시인성 제고) 예방측면의 정보제공 혼돈 → 예방 및 대응측면 정보제공